

프로포절

- 박사과정은 종합시험 통과 후 프로포절 발표
- 숙명여자대학교 IRB(기관생명윤리위원회) 심의는 프로포절 연구 수행 전 반드시 승인받아야 하며, 연구 개시 후에는 심의가 불가능함
- 논문 프로포절 발표회는 교수 과반 참석과 참석 교수 과반 찬선으로 통과
- 영문으로 프로포절 원고 작성 가능. 단, 구술발표는 한국어 필수

예비심사

- 심사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본심사 보류를 지시 가능(학칙시행세칙 제68조④)
- 최소 5명의 심사위원을 **지도교수가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추천**, 최종적으로 **주임교수가 심사위원 자격 확인 후 승인**
-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(박사과정):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되,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함.
 - ① 내부심사위원 : 전공 내 교수님 2인 이상 5인 이하
 - ② 외부심사위원 : 총 5명의 심사위원 중 내부심사위원을 제외한 심사위원
 - ③ 내부 및 외부심사위원의 자격 요건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(제59조)와 동일한 규정 적용
- * 본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지도교수(제59조) 내용

제59조(학위논문지도교수의 자격) 학위논문지도교수는 다음 각 항 해당자여야 한다.

- ①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
- ②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조교수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
- ③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박사학위 소지자로 5년 이상의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
- ④ 위 각항 이외의 자로서 학과교수 2/3이상의 합의로 추천한 자

본심사

구분	시기	내용	심사자	참석자
프로포절	3월 넷째 주 9월 넷째 주	연구문제 당위성 검토 및 기초적 문헌연구	전체 교수진 (과반수이상)	대학원생
1차예비심사	프로포절 동일 학기 (각 심사위원장이 결정)	연구설계 및 방법 검토 (연구문제 해결 방법 검토)	심사위원 5인	없음
2차예비심사	1차 예비심사 다음 학기 프로포절 심사 시 함께 공개발표	연구설계에 따른 연구 결과 검토 (논문초안 완성)	심사위원 5인	없음
본심사	2차 예비심사 학기 (각 심사위원장이 결정)	최종심사	심사위원 5인	없음
유의사항	- 1차, 2차 예비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음 학기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 - 본심사에서 떨어지면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함 - 1차, 2차는 한 학기에 안에 마쳐야 함 - 피심사 희망자는 심사학기 前 학기의 최종일(학사일정)까지 지도교수 승인 후, 대학원 전공주임께 제출 - 문서 제출 일자 (프로포절.예심.본심) : 심사 1주일 전까지 학과사무실로 (17:00까지) - 심사자 수대로 제출 ※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발표자격박탈			

